

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이유

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등록·갱신을 위한 5년간 이수해야 할 총 취득학점을 축소하여 기술사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

또한,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변경,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기한을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경영활동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술사 자격 등록시 필요한 교육훈련 중 이수하여야 할 총 취득학점을 5년간 90학점에서 50학점으로 줄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2호)

나. 기술사사무소 변경, 휴업 또는 폐업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30일로 늘려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대통령령 제 호

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90학점”을 각각 “50학점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15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 전단 중 “90학점”을 “50학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: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<u>90학점</u> 3. (생략)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<u>90학점</u>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 제20조(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)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<u>15일</u> 이내에 하여야 한다.	제12조(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학점</u> 3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학점</u>----- -----. 제20조(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일</u> ----- -----.

교육훈련의 종류·내용 및 인정기준(제13조제2항 관련)

1.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

가. 기본교육: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, 윤리, 환경, 안전, 기술·사회 및 경제의 동향, 사업관리, 국제규격·기준,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, 국제계약, 외국어 등의 교육

나. 전문교육: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
다. 자율학습활동: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

- 1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
- 2) 국내외 석사·박사 학위 과정교육
- 3) 국내외 학회, 단체 및 기업 등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·연수
- 4) 논문·보고서 게재, 기술 발표, 기술도서집필 및 연수 등의 강사
- 5)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, 기술관련 심의·심사·평가 등 기술업무 수행활동
- 6) 기술정책 토론회 등 기술행사 참석
- 7) 특허 출원 및 기술자격 취득

2. 교육훈련의 인정기준

가.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술사가 이수하는 8학점의 교육훈련에는 제1호가목의 기본교육 중 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나.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이수하는 50학점의 교육훈련에는 제1호가목의 기본교육과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학점의 합이 40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기본교육 중 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이 8학점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다.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